

### ● 환경부고시제2020-230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칙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 신청과 그 심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승인의 신청)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
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한 신청인은 승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승인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승인심의)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승인여부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결정 통지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0-6975	CEO에게 팔려간 신부	미즈시마 시노부/ 소열	주)학산문화사	2020-09-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011376	2020-11-10	선정성	2020-11-10
2020-6976	살라자르의 유희	제니퍼 헤이워드/이현 숙	주)신영미디어	2020-09-1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011377	2020-11-10	선정성	2020-11-10
2020-6977	태양 아래 눈동자	하이디 라이스/ 김은영	주)신영미디어	2020-09-1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011378	2020-11-10	선정성	2020-11-10
2020-6978	白坂有以寫眞集 白い、有以。	14y.ムラミツ	ロングランドジェイ/ 에스이십사	2020-09-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011238	2020-11-10	선정성	2020-11-17
2020-6979	『くれあそび 小鳥遊くれあ寫眞 集』	篠原潔	双葉社/ 에스이십사	2020-08-23	간행물 윤리 위원회	2020792	2020-11-10	선정성	2020-11-17
2020-6980	EX MAX! DELUXE 特別總集編 2020夏	社編	樂樂出版/ 에스이십사	2020-09-03	간행물 윤리 위원회	2020793	2020-11-10	선정성	2020-11-17